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전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등〉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74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전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2
2. 폐기물최종처분업자에 대한 재무능력 허가요건 도입 등	12
3.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정보 공개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신설	19

I. 제안경위

2026년 2월 27일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입지 과정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나아가 매립시설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가 허가 취득 후 단기간 내 수익을 거둔 뒤 고의로 부도 또는 방치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도 발생한 바 있음.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과정에서도 환경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갈등과 불신을 누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 받은 행정청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최종처분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재무 건전성을 허가요건에 추가하여 사업계획 검토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별로 반입폐기물의 종류, 환경관리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에 책임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제25조의5 신설 및 제31조 등).

Ⅲ. 검토의견

1.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전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개정안은 ①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② 허가기관이 주민 건강 및 주변 환경 영향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사업계획에 주민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후단 및 제5호, 제25조의5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생략)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 -----,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현행	개정안
1. 2. (생략) 3. (생략) 4. (생략) <u><신설></u> ③ (생략) ④ ~ ⑰ (생략) <u><신설></u>	있다. 1. 2. (현행과 같음) 3.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제25조의5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와 사업계획 반영이 적절히 이 뤄졌는지 여부 ③ (생략) ④ ~ ⑰ (현행과 같음) 제25조의5(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제25 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 려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또 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 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해 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 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 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의 변 경 또는 시설의 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변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제1

현행	개정안
	<u>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¹⁾는 ①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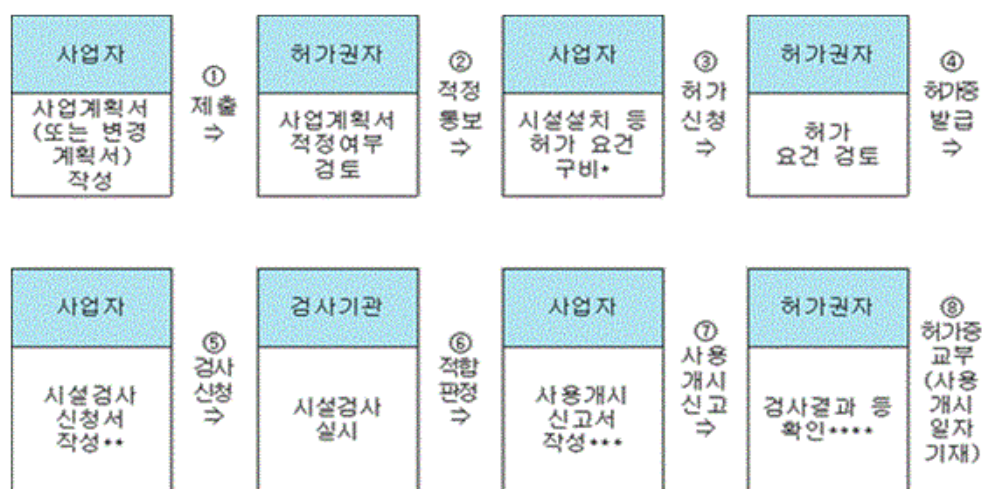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② 허가권자가 이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하고, ③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허가신청기간 내에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면, ④ 허가권자는 요건 확인 후 이를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과정에서 허가권자는 주민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나, 실무에서는 현행법 제32조2)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2) 「폐기물관리법」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9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시 의제되는 배출시설(대기·물·소음 등) 소관기관의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 판정이 있는 경우 부적정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결여되어 있는 실정³⁾임.

한편,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규정⁴⁾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해로운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공고·공람하고 사업자가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⁵⁾하고 있으며, 협의기관인 기후에너지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 3) 참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4호, 2025. 11. 5. 시행)에서는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4) 「환경영향평가법」
-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14. (생 략)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생 략)
-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요건은 다음과 같음.

시설 구분	규모
매립시설	조성면적 30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 330만㎥ 이상
매립시설(지정폐기물)	조성면적 5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 25만㎥ 이상
소각시설	100톤/일 이상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음식물류 폐기물)	100톤/일 이상

환경부장관은 해당 절차의 이행 및 반영 여부를 검토⁶⁾하여야 함.

또한, 폐기물처리업은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후 '최종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됨.

이는 재활용 목적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처분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대상인 '도시·군계획시설⁷⁾'에 해당하여, 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 청취 및 반영이 의무화⁸⁾되어 있기 때문이며,

5)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 절에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처분능력 100톤/일 미만인 일반소각시설 등 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의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해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판시⁹⁾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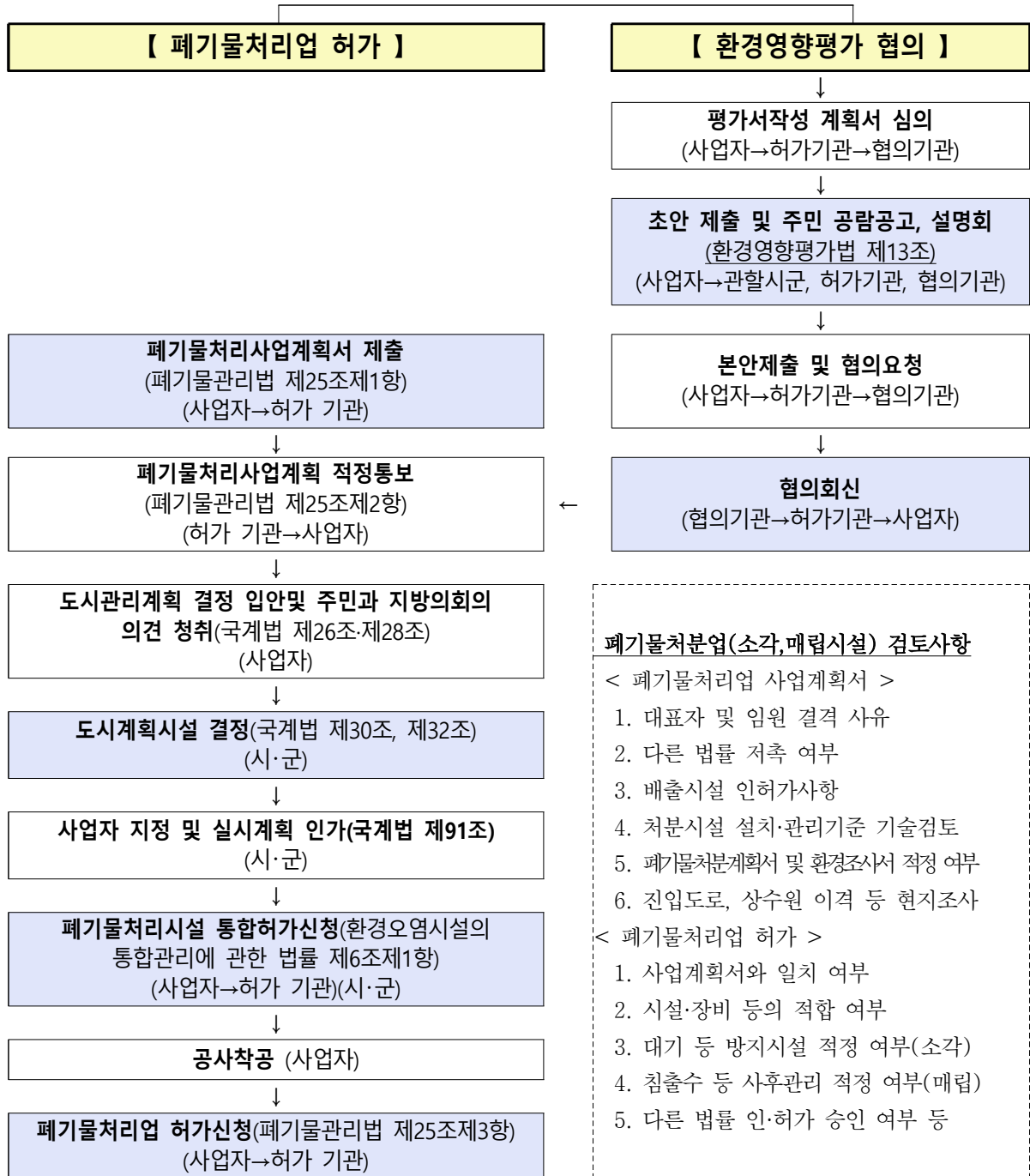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③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9) 법령이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판 2012두11164, 2015. 1. 29.)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 의견 수렴절차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거칠 의무가 없는바¹⁰⁾,

10) 예컨대 처분능력 일 100톤 미만 규모의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과 「국토의 계획 및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제출 전 단계부터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여 지역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허가기관이 주민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때 전문기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 영향 검토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동시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에는 중복 절차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①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 제출·검토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미만 규모의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별도로 없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촉발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는 점, ②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전기사업법」상 태양광·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다른 입법례에서도 주민 의견수렴 절차¹¹⁾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의무가 없음.

1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線路)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4.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의 경우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사업법」

동의한다는 의견임.

반면, 광주광역시와 한국폐기물협회 등 4개 단체¹²⁾는 ① 「환경영향평가법」 등 다른 법률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② 주민 반대의견을 근거로 허가권자가 사업계획을 반려할 수 있게 되면 사실상 신규 폐기물처리업의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임.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12) 한국폐기물협회,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2. 폐기물최종처분업자에 대한 재무능력 허가요건 도입 등

개정안은 ① 폐기물최종처분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계획 검토 항목 및 허가 기준에 '재무능력'을 추가하고, ② 허가기관이 사업계획서 상의 기준을 검토할 때 전문기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후단 및 제3호, 제25조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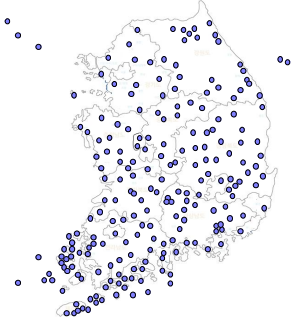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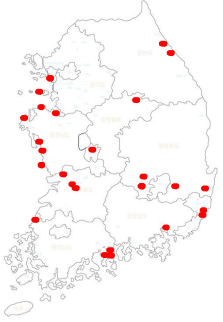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생략)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 ----- ----- .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	3. ----- 시설·장비·기술능력 재무능력(최종

현행	개정안
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u>처분업만 해당한다)</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u>시설·장비 및 기술능력</u> 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u>시설·장비 및 기술인력</u>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③ ----- ----- ----- ----- ----- ----- ----- 시설 <u>· 장비 · 기술능력과 재무능력(최종처 분업만 해당한다)</u> ----- ----- ----- ----- ----- ----- ----- ----- <u>시설 · 장비 · 기술능력 과 재무능력(최종처분업만 해당한다)</u> ----- -----.
④ ~ ⑪7 (생략)	④ ~ ⑪7 (현행과 같음)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허가, 설치·운영, 사후관리까지 약 50~60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필수 기반시설이며,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¹³⁾에 따라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공공(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산업(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은 민간에서 구축·운영 중임.

[폐기물 매립장 지역별 분포 현황]

공공 매립장 (213개소)	민간 매립장	
	민간 처리업체 (35개소)	자가처리 (26개소)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행법 제25조¹⁴⁾는 허가권자가 제출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13)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4)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대하여 ①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②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다른 법률 저촉 여부, ③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의 허가기준 부합 여부, ④ 주민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업종별 법정 기한 내에 사업계획에 명시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실제로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이와 같은 요건을 완비하여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함.

이처럼 현행법령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시설·장비와 기술능력 중심의 기술적 요건만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재무적 건전성이나 자금 조달 능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대규모 초기 투자 대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최종처분업(매립시설)의 특성을 악용하여, 사업자가 매립시설을 조기에 포화시켜 수익을 거둔 뒤 사후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자 고의로 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도를 내거나 시설을 방치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충청북도 제천시, 경상북도 성주군 등 총 7개소의 매립장에서 방치 및 비정상 운영 문제가 발생하여 공공 관리로 전환되는 등 사후 처리에 막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투입¹⁵⁾되고 있으며,

매립시설은 매립률이 높아질수록 사후 관리 비용 부담으로 인해 고의적인 방치 유인이 급증하는 특성이 있어 진입 단계에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예방적 통제 수단 마련이 시급함.

한편, 현행법¹⁶⁾은 지정폐기물¹⁷⁾의 경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허가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있는 반면, 그 밖의 폐기물의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최종 허가를 담당하

15) 참고. 공공이 관리중인 전국 부도·방치 민간 매립시설 현황(7개소)

16)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1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지정폐기물은 지방환경관서가 담당하고 그 밖의 폐기물은 시·군·구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허가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고도의 기술성과 환경적 안전성이 요구되는 대규모 최종처분시설의 사업계획을 객관적·전문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일선 행정청의 인력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반면, 유사 입법례인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¹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절차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완하고 있음.

즉, ① 부실 업체의 진입을 차단하여 매립시설 방치에 따른 재정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점, ②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일선 행정청의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18)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부터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한국환경연구원
2.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종처분시설의 부도 및 방치 위험을 방지하고 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나치게 높은 재무능력을 요건으로 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허가 요건을 정할 때 과도한 시장진입 제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정보 공개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신설

개정안은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②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66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 (생략)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u>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등 운영정보와 함께 공개해야 한다.</u>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 ----- <u>공개해야 한다.</u>

현행	개정안
④ ~ ⑦ (생략) ⑧ 제2항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u>측정결과의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u>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범위, <u>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u>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u>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u>」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3. (생략) <u><신설></u> 14. ~ 19.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 <u>공개대상 운영정보, 공개 방식 등 필요한 사항</u>-----. ⑨ -----, <u>공개 방식 등 필요한 사항</u>-----. <u><삭제></u> 제66조(벌칙) ----- 1. ~ 13. (현행과 같음) <u>13의2.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u> 14. ~ 19.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¹⁹⁾에 따라 오염물

19) 「폐기물관리법」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질 측정 의무 대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측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소각·매립시설,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3년마다 시설 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와 같이 제출받은 오염물질 측정 결과와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역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시설의 설치 및 가동 과정에서 인근 주민과의 사회적 갈등이 상시 유발되는 특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정보 공개 제도는 관리 당국이 사후적으로 공공

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⑧ 제2항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의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범위, 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1일 처분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1일 처분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3.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4.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1일 재활용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열회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열회수시설의 1일 재활용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환경 오염에 대한 불안감과 정보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안 제31조가 입법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환경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음으로, 안 제66조는 현행법상 유사한 환경 갈등 소지가 있어 정보공개 의무가 도입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제조 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동등한 수준의 법정형을 부과²⁰⁾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보의 허위 공개를 방지하고 제도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보 공개를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고, 벌칙 신설을 통해 의무 이행을 담보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법무부는 '오염물질 배출결과나 폐기물의 종류 등 운영정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²¹⁾ 등이 포함되

20)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①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이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4. 제1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어 있을 수 있음에도 ‘영업비밀성’에 대한 고려없이 위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따라서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유사 입법례²²⁾와 같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48

22)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검증 결과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및 표시) ① 수소연료공급시설 중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수소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소판매사업자의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참고

공공이 관리중인 전국 부도·방치 민간 매립시설 현황(7개소)

※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 번	소재 지	지정 폐기물 (%)	방치 원인	공공지원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 사용액	소유권 (이전년도)
1	충북 제천	60	운영중 사고	국비 49억원('17~'22) 지방비 52.4억원('13~'22) ※ 최종복토비(20억원), 침출수 유입유출 차단시설 등(44.4억원), 침출수 처리시설(19억원), 침 출수 처리비(18억원)	7.9억원 (전액)	現 제천시('19~) ※ 대원인바이로텍('06) → 에너지드림('11) → 에어돔 붕괴('12) → 폐쇄대행('17, 환경공단) → 제천시('19)
2	경북 성주	24	운영중 사고	국비 23.5억원('24) 지방비 23.8억원('18~'24) ※ 침출수 저류시설 등(14.3억원), 침출수 처리비(33억원) * 최종복토(36억원)는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으로 집행	36억원 (전액)	現 성주군('22~) ※ 지엠이앤씨('13) → 에어돔 하강 후 방치 → 폐쇄대행('20, 환경공단) →성주군('22)
3	경기 화성	100	사후관리중 업체부도	지방비 18억원('16~'24) ※ 침출수 처리비 등(18억원)	4.9억원 (잔액 3.2억원)	現 화성시('14~) ※ 환경부('87) → 사용종료('97) → 에프엠미래테크('02) → 업체 부도('08) → 토마토저축은행('10) → 은행 파산('13) → 화성시('14)
4	충남 당진	70	사후관리중 실소유주 사망으로 기부채납	지방비 42억원('12~'24) ※ 침출수 처리시설 등(27억원), 침출수 처리비(15억원)	보험 환급액 (4억원) 기부	現 당진시('12~) ※ 원광인바이로텍('01) → 사용종료('11) → 소유주 사망('12) → 당진시 기부채납('12)
5	세종 연동	33	사후관리중 업체부도	지방비 4.6억원('21~'24) ※ 침출수 처리비(4.6억원)	6.4억원 (전액)	現 개인('06~) ※ 한중('99, 채규산) → 사용종료('02) → 업체 폐업('02) → 개인('06~) *세종시, 금강청 관리 중
6	전북 완주	-	운영중 불법적발 및 업체부도	지방비 170억('19~'24) ※ 우수배제시설(11억원), 침출수 유 출 차단시설 등(127억원), 침 출수 처리시설(20억원), 침출 수 처리비(12억원)	9.9억원 (전액)	現 보은('14~) ※ 보은('14) → 불법복토('14) → 사용종료('17) → 업체 부도('18) *완주군 관리중
7	강원 삼척	-	운영중 업체부도	지방비 11억('14~'24) ※ 침출수 처리비(11억원) * 최종복토(4억원)는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으로 집행	4.0억원 (전액)	現 태정바이오텍('10~) ※ 태정바이오텍('10) → 업체 부도('13) → 허 가 취소('14) → 폐쇄 ('16) *삼척시 관리중